

2020-5호

05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5 호

05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09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11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12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16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22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2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33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5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39 부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40 대구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 기탁



- 41 인천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 42 대전시의회,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 43 경남도의회, 등교개학 대비 학교 방역상황 점검
- 44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청렴한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청렴서약제' 시행

최근 제 · 개정 법령

- 49 건강가정기본법
- 50 형법
- 51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55 충청북도 충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등 관련 질의
- 5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등 관련 질의
- 63 경상남도 거창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련 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5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1.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7558호, 2020. 5. 1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1.] [대구광역시조례 제5424호, 2020. 5. 1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시행 2020. 5. 8.] [광주광역시조례 제5436호, 2020. 5. 8.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주광역시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한다.

② 시장은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시장은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적용대상) 제5조에 따른 지방공휴일의 적용대상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9.] [경기도조례 제6561호, 2020. 5. 1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2. “도민 등”이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등) 공공시설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도민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취소 여부 통지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우선사용)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공공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①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3조(사용료 반환) ① 경기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되어 경기도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도지사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도지사 승인 없이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5.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5.] [강원도조례 제4560호, 2020. 5.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이모빌리티 산업”이란 이모빌리티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을 총칭한다.
3. “이모빌리티 기업”이란 이모빌리티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으로써 제조, 유통, 판매,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개별기업 및 조합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시책과 재원조달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
3. 이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이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4. 도내 이모빌리티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지원
5.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이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
6.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7. 그 밖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모빌리티 산업의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제6조제1항제6호 대상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 및 인증 지원
4. 기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이모빌리티 제품의 품질제고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의한 도내 유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금)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상생협력) 도지사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야 하며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고 행·재정적 지원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모빌리티 산업의 소요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 자문
2. 신지식 및 신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3. 이모빌리티 기업 수요의 협력 사업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시행 2020. 5. 15.] [충청북도조례 제4390호, 2020. 5.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19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와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년후견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대응, 후견인 양성,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인권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등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치료 및 노인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등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5. 14.] [경상남도조례 제4774호, 2020. 5. 14.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
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7. 도내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자녀돌봄 및 영육아보육 지원

9. 문화·예술·체육행사

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32호, 2020. 5. 1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4.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이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경미사건의 특례) 도지사는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5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294호, 2020. 5.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의 분야별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지도·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20.] [부천시 조례 제3540호, 2020. 4.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
 -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 나. 부천도시공사
 - 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사회복지시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1항의 1호·2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의2호·3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다. 「영유아보호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에 위치한 영유아보호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자체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5.] [음성군 조례 제2614호, 2020. 5.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인계절근로자(C-4)(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90일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 ② 외국인계절근로자(E-8)(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군 관내에서 5개월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
- ③ 고용주란 음성군 관내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
- ④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 ⑤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 ⑥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F-1-5)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F-1-9)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채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
3. 근로자(C-4, E-8)
4. 결혼이민자 가족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5호

03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부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구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 기탁

인천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대전시의회,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경남도의회, 등교개학 대비 학교 방역상황 점검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청렴한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청렴서약제’ 시행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코로나19 대응전략, 공공의료체계 개선으로 해결하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 사하구3)는 20일(수) 14:00 시의회 4층 이음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주최로 박인영 의장, 시의원, 시 관계 부서,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대담형태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장기화될 코로나19의 극복방안으로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제시하며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은 철저한 방역과 폭넓은 검사진단, 그리고 통제를 기본으로 한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 장기화될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공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며,

“토론회는 2차에 걸쳐 진행할 계획으로 우선 1차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돌아보고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고, 추후 2차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5월 말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차, 2차 토론회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게시하여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 기탁

- 대구시의원, 코로나19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자율적 성금 모금 동참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5월 15일(금) 14시 시의회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시의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3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유례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모았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구시의원 30명 전원이 100만 원씩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3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으며, 성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사업에 쓰여 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마음을 모았다.” 며, “향 후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감염병 등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과 조례안 정비 등 코로나19 후속 조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이용범 의장)는 지난 11일 의장단·위원장단 및 각 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결정한 것에 이어서, 15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관련 대구·경북지역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위해 화훼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왔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범 의장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실업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고용 안정에도 힘을 보태고자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다.” 고 밝히면서, “자발적 기부운동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6일(수) 오후 2시 대전시의회 1층 교육위원장실에서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백동기 학원연합회장은 타·시도 지원 현황 및 학원, 교습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청취 후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동기 학원연합회장은 “코로나19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 협조 차원에서 5주에서 6주 이상을 휴원하였다”며 “다음주부터 등교가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서 방역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해 줄 것과 미집행 휴원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정기현 위원장은 “민간영역이지만 학원, 교습소가 코로나19 방역이 뚫리면 그 영향이 학교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 사전 방역을 위해 학원 등에 방역용품 등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등교개학 대비 학교 방역상황 점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지난 11일 생활방역 체제 전환으로 등교개학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 명곡고등학교와 의창초등학교의 방역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열화상 카메라 설치, 교실 책상 재배치, 식당 칸막이 설치, 마스크 비축 등 방역 준비 상황을 살피고, 등교개학에 대비한 학교 자체 코로나 예방대책을 청취하였다.

이날 표병호 위원장은 “등교개학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 안전이라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자체 소독 등 학교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내 유·초·중·고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개학이 거듭 연기되다가 우선 5월 13일부터 고3, 5월 20일부터 고2, 중3, 초1~2와 유치원, 일주일 후인 5월 27일부터 고1, 중2, 초3~4, 마지막으로 6월 1일부터 나머지 학년인 중1, 초5~6 이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전국 최초 청렴한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청렴서약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의장 김태석)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 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회신을 받고 있다.

이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하면서 바로 시행하게 된다.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건설 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도입·운영 중인 제도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도입하였다.

특히, 자치입법 활동에의 청렴서약제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청렴·공정한 지방의회 구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청렴서약 예시>

- ◆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 이 검토결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5호

04



최근 제 · 개정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형법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추가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용을 보조할 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에 관한 정보를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제11조).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5조제4항).
- 다. 가족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20조제1항).
- 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변경 절차를 명시함(제3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5조제6항 신설).

2.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013호, 2020. 2.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 변화가 능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및 시·도지사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이용자 등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 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 정 문

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6항·제7항, 제11조의5제3호·제4호 및 제35조제5항제4호·제5호 신설).

다.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자연휴양림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6제3호 신설, 제38조제3항제3호).

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마.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5호

05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북도 충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등 관련 질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등 관련 질의

경상남도 거창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련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충주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주시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의견20-0097, 2020. 5. 11., 충청북도 충주시]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충주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각주: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이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을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를 바탕으로 충주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행위허가(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변경허가(각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개발행위허가등”이라 함)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40조제1호), 같은 법 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면서(제56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신청된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개발행위허가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장제1절),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제133조제1항제5호 및 제21호가목),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137조제1항제2호)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된 개발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같은 규정에 위반된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같은 법의 입법목적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는 점(각주: 국토계획법 제1조 참조) 등까지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같은 법 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내용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같은 법과의 관계에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별표 제44호에서는 국토계획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등(각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통칭하며, 이하 같음)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주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절차와 같은 위원회가 수행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로 규율하는 법률로서(제2장부터 제4장까지), 같은 법의 입법목적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제1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포상금 체계를 하나로 획일화하는데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각주: 법제처 2016. 7. 1. 의견제시 16-0122, 법제처 2016. 7. 4. 의견제시 16-0096 참조),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의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각주: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충주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같은 법과의 관계에서 금지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등에 대한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충주시에서 같은 법에 따른 포상금과 유사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은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할 것을 명하여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평일 자정을 넘어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1항 등 관련)

[의견20-0100, 2020. 5.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질의요지】

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할 것을 명하여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평일 자정을 넘어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함)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이하 “비상대기”라 함) 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라 평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실시한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 의무(제48조)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규정(제6장)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무규정에서는 비상근무에 대해서 비상근무의 종류(제2조의2)와 비상근무 요령(제2조의4), 비상근무의 발령과(제2조의3) 해제(제2조의5)에 대해 규정하면서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제2조의6)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제4조제1항),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자의 경우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조제2항).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과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는 이를 바탕으로 복무규율이나 초과근무가 정해지고 지방공무원의 보수나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데, 공무원의 적정한 배치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나 수당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례로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의해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할 때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

근무를 발령하는 대신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에서의 비상대기를 명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시간 외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제4조의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해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무규정 제4조에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자의 경우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제2항), 달리 평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시간 외 근무를 실시한 자를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는 근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여, 평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근무수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신속한 위기극복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종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세분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하고, 해당 비상근무 실시 공무원을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의6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대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사무실에서의 비상대기를 명하고 이에 따라 평일 자정을 넘어 비상대기를 실시한 해당 근무자에 대해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비상근

무의 발령요건 및 근무수칙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실시한 복무규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수구청장이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라 평일 자정을 넘겨 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실시한 해당 공무원을 다른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의견20-0106, 2020. 5. 19., 경상남도 거창군]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등에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장려 및 지원(각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제32조의3제1항)하면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결정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제32조의2제3항)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제32조의2제4항)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관이므로(각주: 법제처 2019. 4. 4. 의견제시 19-0101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각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서는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공모절차와)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고 신청한 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예컨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과 같이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법령상 심의범위에 포괄될 수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그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라”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농림부·식약처 업무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가공·유통은 식약처에서 관장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선 업무 수행 시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통합 관리가 어려워 위생·안전 관리 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장 검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유통 중인 계란 검사는 지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전가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방 의원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안전 관련 사업의 예산이나 인력 지원 대부분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수립 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이원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축산단체협의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수입 검역·검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안전부·농식품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 2020. 5. 25. 보도자료 -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5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